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7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 안 일 자 : 2025년 12월 17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9조의2제4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은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임에도, 적용 대상 업종인 ‘지역건설산업’ 범위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건설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건설현장을 넘어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,
- ‘외국인근로자’를 ‘외국인건설근로자’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안 제9조의2제4호의 “외국인근로자”를 “외국인건설근로자”로 수정함.(안 제9조2제4호)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의2제4호 중 “외국인근로자”를 “외국인건설근로자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 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·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 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 종사자 안전·보건 및 재해예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</u>
	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외국인건설근로자----- ---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 · 보건 및 재해예방)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·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의2(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 · 보건 및 재해예방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</u></p>